



산업자문 운영 규정

제정일	2013. 3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산학협력단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산업자문” 이라 함은 동서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“산업체등” 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산업교원” 이라 함은 동서울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산업자문료” 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 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 3조 (산업교원 구성)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, 경영 분야,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 4조 (산업자문 방법 등)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

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산업자문료 납부)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(시간당 산업자문료에 지원시간을 곱한 금액)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 시 산업교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
제 6조 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80%를, 산학협력단에 20%를 배분한다.

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후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.

제 7조 (실적평가반영)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임용 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.

제 8조 (기타사항)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산업자문 기업 현황

1. 일반 현황

신청기관명		대표자명	
설립일자	년 월 일	주 생산품 (2개 이상)	
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	
상시 종업원수	명	연구인력	명
주소	우(-)	전화	
		FAX	

2. 조직 및 인력 현황

2-1. 조직 현황(조직도 포함)

(조직도 예시)



2-2. 인력 현황

(단위 : 명)

임원	직원			기타	계
	사무직	생산직	연구직		

※ 첨부 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산 업 자 문 실 시 결 과 보 고 서

접수번호	※		분야 :
기술(자문)명			
참여교수 (자문교수)	소 속		직 급
	성 명		연락처
	E-MAIL		
참여기업 (현장지도 담당자)	회사명		직 급
	성 명		연락처
	E-MAIL		
	회사명		직 급
	성 명		연락처
	E-MAIL		
자문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		
<p>동서울대학교 산업체 산업자문을 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책임교수 _____ (인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업체대표자 _____ (인)</p> <p>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</p>			

산업자문 내용

지원일자	20 . . . ()요일 (시간)
산업자문 내용	※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지원 전·후와 비교하여 상세히 기술 (상세자료 별첨)
비 고	

산업자문 성과 및 기대효과